

「고흥군 군계획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와 「고흥군의회 회의규칙」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.

2024년 6월 7일

고 흥 군 의 회 의 장



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안이유

-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을 완화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농어촌 주민들에게 새로운 소득증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에 대한 예외 규정(안 제18조의2제4항)
 - 염해농지를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추진 시 이격거리 제한 완화

3. 일부개정조례안 : 붙임

4. 조례안 예고기간 : 2024. 6. 8. ~ 2024. 6. 14.(7일간)

5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흥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사항

- 1)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2) 의견 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- 3) 기타 참고사항 등

나. 의견 제출방법 : 서면, 팩스,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도 가능

다. 의견 제출받는 곳

- 1) 우편 : (59542)/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,
고흥군의회의회장 (참조 : 의회사무과장)
- 2) 전화 : 061-830-5032, 팩스 : 061-830-5595

붙임 1.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2.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서식 1부. 끝.

[붙임 1]

조례 제 호

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2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1. 자가소비용 목적 또는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
2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나 이를 민간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경우
3.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

가. 「농지법」 제36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태양광 발전시설

나. 사업장 소재지의 마을(사업장 중심으로부터 1km 이내에 있는 읍면)에 주소를 두고 실제 5년 이상 거주하는 세대 중 3분의 2 이상의 세대가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사업

다. 국도, 지방도, 군도에서 직선거리로 3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

라. 주거밀집지역(10호이상)으로부터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

마. 「신·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·운영 지침」 별표 2 비고의 제16호에서 정하는 주민참여형 사업

바.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정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수익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사업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의2(발전시설 허가기준) ① ~ ③ (생 략)	제18조의2(발전시설 허가기준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 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나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 외한다.(중전 제3항에서 이동 2021. 12.06.)	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제2항 제1호부터 제2호에 따 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1. 자가소비용 목적 또는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2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 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 라 설치하는 경우나 이를 민간 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경우 3.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 하는 경우 가. 「농지법」 제36조 제1항 제 4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 는 태양광 발전시설 나. 사업장 소재지의 마을(사업 장 중심으로부터 1km 이내 에 있는 읍면)에 주소를 두 고 실제 5년 이상 거주하는 세대 중 3분의 2 이상의 세 대가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사업 다. 국도, 지방도, 군도에서 직 선거리로 30m 이내에 입지 하지 아니할 것

⑤ ~ ⑦ (생 략)	<u>라. 주거밀집지역(10호이상)으</u> <u>로부터 200m 이내에 입지</u> <u>하지 아니할 것</u> <u>마. 「신·재생에너지 공급의</u> <u>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</u> <u>화제도 관리·운영 지침」</u> <u>별표 2 비고의 제16호에서</u> <u>정하는 주민참여형 사업</u> <u>바.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정</u> <u>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으로</u> <u>수익을 주민들과 공유하는</u> <u>사업</u> ⑤ ~ ⑦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--------	---

[붙임 2]

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 :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: (서명 또는 날인)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자치법규안 내용	찬 성 여 부		의 견	비 고
	찬성	반대		